

UPDATES 법률정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표시광고법 개정안의 동의의결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번째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사례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최종 확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시한 연장
발명진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

CASES 업무사례

- MBK파트너스, ING생명보험 인수
- H&Q, Monster Worldwide로부터 잡코리아 지분 인수
- Carlyle, 약진통상 인수
- 한앤컴퍼니, 웅진식품 인수
- 스카이레이크와 Carlyle, 테이팩스 인수
- Anchor, GS PIA로부터 지오영 지분 취득
- 맥쿼리 그룹, 영양풍력발전공사 인수
- 음원유통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판결 선고
- 펀드 투자설명서의 법적 성격 관련 대법원 판결
-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업 허가
- 현대하이카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 그루폰, 티켓몬스터 인수
- 국민연금, 독일 뮌헨 프라임급 오피스빌딩 취득
- 미래에셋, 시드니 Four Seasons 호텔 건물 인수
- AIA, 도심권역 오피스빌딩 인수
- 마스턴 제7호 리츠(REIT), PCA Life Tower 빌딩 취득

NEWS 새소식

- 14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4)
- 국내 로펌 종합 1위 - 한경비즈니스 '베스트 로펌' 조사
-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2014
-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3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3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인사·노무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

2013년 12월 18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이 회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임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통상임금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기업 운영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은 향후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과거 리스크 분석 및 청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나아가 회사의 경영 상황 등을 분석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진단을 통하여 분석된 리스크 금액을 기초로 노사 협상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 체계의 개선

통상임금 관련 미래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는 통상임금성 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임금 구조를 단순화하면서, 성과주의 강화 등 임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임금 체계 개선에 따라 파생되는 인사 제도 및 이슈 검토

임금 체계 개선 시에는 평가, 보상 등 다양한 인사제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력 운영 체계의 변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년 연장 등 임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인사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임금 체계 등을 실행하기 위한 협상 전략

임금 체계 개선 등 통상임금 리스크 대응 방안이 수립된 이후에는, 직원 커뮤니케이션 또는 노동조합과의 합리적인 협상을 통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협상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협상 포인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 연동 비용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통상임금 상승으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초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비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수익 증가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통상임금 이슈 해결을 위한 제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사 시스템, 노사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원정 변호사 wjkim@kimchang.com, 박현제 변호사 hyunjae.park@kimchang.com

환경

화평법 및 화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2014년 2월 18일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각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13년 12월 27일에 화평법 및 화관법의 각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2013년 9월경 구성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평법 관련

이슈	하위법령 주요 쟁점
보고 의무	법률안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규칙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판매자의 경우에는 용도 및 판매량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예: 마트, 슈퍼마켓 등)는 보고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함
등록 의무	법률안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할 의무가 있음. 시행규칙에서는 특히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예고하도록 규정하였음
소량간이등록	법률안에서는 ‘신규화학물질’도 등록의무가 있는바, 하위법령에서는 이를 완화하여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제출자료가 간소화되도록 규정하였음
R&D 면제	법률안에서는 R&D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면제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바, 시행령에서는 환경부장관의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면 등록의무가 면제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화학물질이 사업장, 연구소 등 장소적으로 이전하는 것도 허용되도록 규정하였음
고분자 면제	고분자 화합물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등록면제확인을 받으면 등록의무가 면제됨. 다만, 저우려고분자 화합물 중 양이온성 등 일부 고분자는 등록면제확인 대상에서 제외됨
물질정보제공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양수인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함. 다만, 구성성분,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물질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화관법 관련

이슈	하위법령 주요 쟁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법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의 발생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는 소량(추후 고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간편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규정하였고,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시설의 경우 단계별 유예기간 부여되었음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법률안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도급을 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고지	법률안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 부칙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게는 단계별 유예기간이 부여됨.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방법이 구체화되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해 대표 전달 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환경부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4년 하반기 경 하위법령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4년 2월경부터 화평법 도움센터(Helpdesk)를 운영하고 각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4년 10월경 1차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및 유예기간을 사전예고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윤정 변호사 yjlee@kimchang.com, 박정환 변호사 jeonghwan.park@kimchang.com

공정거래

표시광고법 개정안의 동의의결 제도 도입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의결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스스로 정정하거나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제도의 운용 방식 등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정안에서의 동의의결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안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상

-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대·명백한 위반행위를 제외한 모든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 단, 공정거래법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제외됨

제출사항

- 해당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해당행위의 중지, 소비자 오인상태의 해소 등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절차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 제시
-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취소

-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번째 동의를결 절차 개시 사례

2013년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통칭하여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최초로 동의를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의를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그 동안 실제로 개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은 (1)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전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행위, (2) 일반검색 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한 행위, (3)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이관제한 정책을 둔 행위, (4)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 계약 시 우선 협상권을 요구한 행위(네이버만 해당), (5) 계열사에 인력을 파견한 행위(네이버만 해당)에 대하여 동의를결을 신청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를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은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
-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
- 동일·유사한 사안에 해외경쟁당국도 동의를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2013년 12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및 다음과 30여 일간의 추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안을 결정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경쟁질서 회복에 필요한 시정안을 비롯하여 네이버 1,000억 원, 다음 40억 원 규모의 이용자 후생제고 및 관련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한 구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2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중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및 관계 행정기관(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통보도 실시되었습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세 일반

2013년 세법개정안 국회에서 최종 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과 의원입법안을 심의하여 2014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당초 정부안”) 중 수정 및 신설된 내용이 있는 바,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

법인들은 세액공제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최저한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당초 정부안에는 이에 대한 개정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최저한 세율을 17.6%(지방소득세 포함)에서 18.7%(지방소득세 포함)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개정 전	개정 후
100억 원 이하	11.0%	11.0%
100억 원 ~ 1,000억 원	13.2%	13.2%
1,000억 원 초과	17.6%	<u>18.7%</u>

* 지방소득세 포함한 세율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8.7% 단일세율 적용대상 수정

당초 정부안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18.7%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은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2014년 1월 1일부터 5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2014년에 제한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 의하면, 고용기업에 직간접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용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단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근무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더라도 2014년까지는 18.7%의 단일세율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단일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일반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 축소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도가 6%에서 4%로 축소되었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 과세 완화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이외에 33%의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되었는데, 추가로 과세되는 법인세율이 33%에서 11%로 인하되었습니다.

백우현 회계사 whbaik@kimchang.com, 정병문 변호사 bmjung@kimchang.com, 서재훈 회계사 jaehun.suh@kimchang.com

기업법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시한 연장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 제도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하여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으며, 이번 일몰시한 연장은 최근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몰시한 연장과 함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가 도입되어 협의회의 의결에 대한 불복수단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박종구 변호사 jkpark@kimchang.com, 김완석 변호사 wansuk.kim@kimchang.com

지식재산권

발명진흥법 및 그 시행령 개정

종업원들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 개정 발명진흥법(“개정법”)이 2014년 1월 31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 발명진흥법 시행령(“개정 시행령”)도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종업원의 협상력과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정당한 보상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관한 각종 규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의 범위 제한

종전의 발명진흥법은 다른 계약이나 내부 규정이 없다면 직무발명의 발명자인 종업원이 해당 발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되, 사용자가 그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사용자(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80억 이상인 기업)의 경우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절차적 규정 및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기준 제시

개정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의 결정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작성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업원과 협의하고,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제15조 제1항 내지 4항). 한편, 개정법은 위와 같은 절차적 의무를 준수하여 작성된 보상규정에 따른 보상은 발명진흥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나,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5조 제6항).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실질적 운영

그 외에도 개정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나 보상액 등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6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개정법은 종업원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이견이 있어 사용자에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를 요구하였음에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므로(제60조 제1항 제1호) 주의가 요망됩니다.

위와 같이 발명진흥법이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한층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에 관한 제반 규정들을 다시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외의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 확보를 위해서도 승계 등에 관한 명확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MBK파트너스, ING생명보험 인수

2013년 12월 24일, MBK파트너스는 ING Group 계열 회사인 ING International II B.V.로부터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사모펀드의 보험회사 경영권 인수거래로서 규제당국의 인허가 승인과 관련하여 복잡한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김·장 법률사무소는 거래 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인수금융 자문, 거래종결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정부 인허가 취득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Carlyle, 약진통상 인수

2013년 12월 23일, The Carlyle Group이 설립한 약진홀딩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약진통상의 지분 100%를 개인주주들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약진통상은 글로벌 의류브랜드에 대한 OEM방식의 공급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니트 의류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구조 수립, 법률 실사, 협상 및 거래문서 작성, 인수금융 자문, 거래종결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H&Q, Monster Worldwide로부터 잡코리아 지분 인수

2013년 12월 19일, H&Q는 Monster Worldwide로부터 잡코리아 유한회사의 지분 49.9%를 인수하였습니다.

본 거래는 H&Q가 운영하는 3호 사모펀드가 실행한 최초의 투자로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법률실사의 수행, 지분양수도계약, 주주간계약 등 관련 계약의 작성, 협상 및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를 포함하는 정부인허가의 취득, 인수금융계약의 협상 및 체결, 거래종결업무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한앤컴퍼니, 웅진식품 인수

2013년 12월 6일, 한앤컴퍼니는 웅진홀딩스로부터 웅진식품 지분 57.87%를 인수하는 거래를 종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사모펀드 규제, 공시 규정, 경쟁법, 도산법 등 관련 규제의 검토, 관련 계약의 작성 및 협상, 정부인허가의 취득, 거래종결업무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카이레이크와 Carlyle, 테이팩스 인수

2013년 7월 31일, 국내 사모펀드 스카이레이크와 미국계 사모펀드 The Carlyle Group은 케이디비제이케이엘 제2호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산업용 테이프 제조업체인 테이팩스의 주식 100%를 인수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스카이레이크 및 The Carlyle Group을 대리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등 거래문서의 작성 및 협상, 정부인허가 취득, 거래종결 등 본건 거래 전반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nchor, GS PIA로부터 지오영 지분 취득

Anchor Equity Partners (Asia) Limited의 계열회사들은 2013년 10월 31일 GS PIA의 계열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지오영 주식을 취득하고, 지오영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전환 후 기준으로 지오영 지분 총 57.6%를 취득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구조의 검토, 법률실사의 수행, 계약서 작성 및 협상, 정부인허가의 취득, 거래종결업무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맥쿼리 그룹, 영양풍력발전공사 인수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는 2013년 12월 12일 경상북도에 위치한 61.5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보유한 영양풍력발전공사의 주식 100%를 스페인의 악시오나 에너지사로부터 약 1,620억 원에 인수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을 대리하여 양해각서 체결부터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법률실사, 계약협상, 기업결합신고, 전환사채 인수, 인수금융 등 본건 거래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음원유통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서 대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취소 판결 선고

공정거래위원회의 2011년 6월 29일자 13개 음원유통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수 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는바, 2013년 11월 14일 대법원은 이 중 두 건에 대하여 해당 음원유통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 중 한 건에 관하여 음원유통사업자를 대리하였으며,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이때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음원 사업자들 사이에 곡수 무제한 Non-DRM 상품에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특정한 곡수 제한 Non-DRM 상품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한 합의) 무렵 이 사건 합의를 주도한 음원 사업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달리 원고가 다른 음원 사업자와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의사를 교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며, 또 곡수 제한 Non-DRM 상품에 대한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원고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함
- 따라서 원고와 다른 음원 사업자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묵시적이거나 의사의 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위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해당 음원유통사업자가 다른 사업들과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음원유통사업자 측 주장이 타당함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음원유통사업자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증권

펀드 투자설명서의 법적 성격 관련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은 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구조의 펀드에 대한 투자설명서상 투자대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을 리먼브라더스로 변경하였다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사건에서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판결).

이 판결은 투자설명서의 계약적 구속력 여부와 관련하여 최초로 명시적인 판단을 한 판결로서, 특히 자산운용사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대로 운용할 계약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들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09나121028판결)은 투자설명서상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은 주요 투자위험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엔피파리바의 신용등급이 강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펀드는 투자금 대부분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취득하는 점 등을 근거로 “거래상대방” 부분의 기재내용 대로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 투자자들의 손해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투자설명서의 기재내용 자체에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상 거래상대방의 변경에 수익자총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본 사안에서 투자자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주가 변동일 뿐,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춘 경우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는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을 비엔피파리바로 하여 투자자산을 운용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단계에서 피고 자산운용사로부터 수임을 받아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피고 자산운용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 보험업 허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는 2013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국내 최초의 인터넷생명보험회사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건 보험업 허가와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보험업 허가요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현대하이카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현대하이카”)는 2013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해·비용·책임 보험 종목에 대한 추가 영위를 허가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하이카는 자동차보험 이외에 운전자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건 보험종목 추가 영위 허가와 관련하여 김·장 법률사무소는 현대하이카에 허가요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법률자문업무를 제공하였습니다.

방송·통신

그루폰, 티켓몬스터 인수

2014년 1월 2일, 미국 소셜커머스 기업 그루폰은 자신의 자회사(Groupon Trailblazer)를 통하여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기업 주식회사 티켓몬스터의 완전모회사인 리빙소셜코리아의 지분 100%를 LivingSocial Inc.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본건 인수는 그루폰이 모바일 전자상거래로 사업 모델을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루폰은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시장을 가진 한국에서 티켓몬스터가 가진 모바일 매출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티켓몬스터를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그루폰을 대리하여 법률실사, 규제사항에 대한 자문, 계약서 검토, 기업결합신고, 거래종결 등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국민연금, 독일 뮌헨 프라임급
오피스빌딩 취득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기구 설립을 통하여 2013년 9월 지멘스로부터 독일 뮌헨에 소재한 Class A 오피스빌딩을 취득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향후 오피스 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2013년 상반기 국민연금의 프랑스 파리 소재 오피스빌딩에 대한 투자 건에 이어 이번 지멘스 본사 오피스빌딩의 취득 건에 있어서도 유한책임조합계약(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자산운용계약(Asset Management Agreement) 등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거래완결에 이르기까지 국민연금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위 거래의 성공적 완결에 기여하였습니다.

AIA, 도심권역 오피스빌딩 인수

아시아 지역 최대의 다국적 생명보험회사인 AIA 생명은 2013년 12월 2일 중구 순화동에 소재한 AIA 타워(구 N타워)를 취득하였습니다. AIA 타워는 2013년 5월 22일 준공인가를 받은 집합건물 형태의 오피스빌딩으로, 향후 AIA생명 한국지점의 사옥 및 부동산 임대 수입원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AIA생명에 부동산매매계약 등 관련 계약의 체결은 물론 거래완결 그리고 다른 구분소유자와의 관리관계 설정에 이르기까지 집합건물인 AIA 타워의 특징을 고려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위 거래의 성공적 완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미래에셋, 시드니 Four Seasons 호텔
건물 인수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미래에셋”)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정한 부동산투자신탁인 ‘미래에셋 맵스프런티어 호주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호’는 호주 현지의 투자기구를 설립하고 매입자금 중 일부를 현지에서 차입한 후, 2013년 10월 호주 시드니에 소재한 Four Seasons 호텔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호주 내에서 투자자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구조 및 계약 조건을 달성하면서도, 이러한 구조 및 계약조건이 국내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상의 여러 규제(호텔영업 제한, 자회사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 등)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였는데, 김·장 법률사무소는 적절한 거래 구조를 검토하여 관련 계약의 체결은 물론 국내법 준수에 이르기까지 미래에셋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위 거래의 성공적 완결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스틴 제7호 리츠(REIT), PCA Life
Tower 빌딩 취득

마스틴투자운용 주식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인 ‘주식회사 마스틴 제7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2013년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에 위치한 PCA Life Tower 빌딩을 인수하였습니다. PCA Life Tower 빌딩은 강남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건물의 상태가 양호하여 매각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매수희망자들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번 PCA Life Tower 빌딩의 취득 건에 있어서 법률실사, 부동산 매매계약, 취득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등 관련 계약의 체결 및 거래완결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거래의 성공적 완결에 기여하였습니다.

AWARDS

14개 전 분야에서 국내 선두 로펌 선정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4)

영국계 유명 법률출판사인 Legalease가 발행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시장 평가지 'The Legal 500 Asia Pacific'의 2014년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예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전체 14개 분야에서 선두로펌(Band 1)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소 12명의 변호사들이 Leading individuals로 선정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선정분야 및 Leading Individuals는 아래와 같습니다.

Firm Rankings

- Antitrust and competition
- Banking and finance
- Capital markets
- Corporate and M&A
- Dispute resolution
- Employment
- Insurance
- Intellectual property
-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and trademarks
- Projects and energy
- Real estate
- Shipping
- Tax
- TMT (Technologies, Media & Telecommunications)

Leading Individuals

- Banking and finance: 박수만, 허영만, 조영균
- Dispute resolution: 한상호, 윤병철, 박은영
- Capital markets: 박수만, 허영만
- Intellectual property: 양영준
- Corporate and M&A: 정경택, 노영재, 박종구
- Shipping: 정병석, 이진홍

국내 로펌 종합 1위 - 한경비즈니스 '베스트 로펌' 조사

한경비즈니스의 '2013 베스트 로펌' 조사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번에 한경비즈니스는 한국 200대 기업의 법무팀 및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10개 업무분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내 로펌을 설문하여 우수 로펌 순위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 사무소는 27.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베스트 로펌' 조사가 생긴 이래로 4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스트 로펌'에서 조사된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증권 보험 등 금융 및 자본시장
- 인사 및 노무
- 조세
- 특허와 상표 및 지식재산권
- 공정거래
- 국제분쟁
- 기업 인수·합병(M&A)
- 형사
- 송무 및 중재
- 기업 일반(프로젝트·에너지·부동산 등)

조세 분야 한국 선두 로펌 선정 - Tax Directors Handbook 2014

영국 법률출판사 Legalease가 매년 발행하는 조세 분야 전세계 로펌 평가지 'Tax Directors Handbook'의 2014년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 선두 로펌(Band 1)으로 선정되었으며 백우현 회계사가 leading tax lawyers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로펌 내 조세팀 규모를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100대 로펌 순위에서도 전체 9위에 랭크 됨으로써 한국 로펌 중에서는 유일하게 순위에 포함되었습니다.

**Tax Directors
Handbook
2014**
LEADING FIRM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M&A 법률자문 1위 - Bloomberg 2013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글로벌 미디어그룹 블룸버그(Bloomberg)가 발표한 2013년 종합 M&A 리그테이블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가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총 100건의 자문 실적을 기록하며 건수 기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M&A 법률자문 부문에서는 총 99건, 약 174억 달러의 자문 실적으로 자문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Asia-Pacific Ex-Japan Announced Deals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100	1	17,515	10

South Korea Announced Deals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99	1	17,474	1

국내 M&A 법률자문 1위 - Mergermarket 2013년 종합 M&A 리그테이블

김·장 법률사무소가 인수합병 전문 정보업체 머저마켓(Mergermarket)이 발표한 2013년 종합 M&A 리그테이블에서 국내 M&A 법률자문 부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국내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총 65건, 약 239억 달러의 자문 실적으로 건수 및 금액 기준 모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일본 제외) M&A 법률자문 부문에서 자문건수 기준 5위, 금액 기준 7위(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랭크)에 올랐으며,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M&A Buyouts 부문에서는 총 20건, 약 92억 달러 자문 규모를 기록하며, 건수 및 금액 기준 전체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South Korea M&A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65	1	23,911	1

Asia Pacific (ex. Japan) M&A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65	5	23,911	7

Asia-Pacific (ex. Japan) M&A Buyouts

By Deal Count		By Volume	
Count	Rank	USD (Min)	Rank
20	1	9,272	1

ACTIVITIES

최근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 현안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2013년 11월 28일, 김·장 법률사무소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주최한 '최근 중동지역 건설프로젝트 현안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세미나'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Freshfields의 중동지역 건설 부문 전문변호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가도 초빙되어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세션에서는 Freshfields 중동 건설 부문 전문변호사와 함께 '최근 중동지역 EPC 계약 관련 현안 및 트렌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제2세션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중동지역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고려 요소'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제3세션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임병우 변호사가 '중동 진출 국내기업이 당면하는 각종 문제점 및 그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최근 건설계약 관련 상사분쟁 현안 및 사례소개'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 세미나

법무연수원이 주최한 '역외탈세의 현안 및 대책'에 대한 세미나가 2013년 11월 28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역외탈세에 관심 있는 정부부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정부부처간 협조방안과 법률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지익상 변호사는 '국세조세법상 거주자 지위과 관련된 쟁점'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포럼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포럼이 11월 21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약 120명의 업계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화장품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개선책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저희 사무소의 장보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한국선주상호보험(Korea P&I Club) 주최 갱신전략 세미나

한국선주상호보험(Korea P&I Club)이 주최한 갱신전략세미나가 2013년 11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선박업 관계자 및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저희 사무소의 이진홍 변호사가 참여하여 crew claim 관련 판례 및 법률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윤리학교 ABC 세미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기업윤리학교 ABC' 세미나가 11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기업윤리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대응방안과 2014년 기업윤리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이준호 변호사는 '해외 기업윤리 트렌드 점검' 세션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과 영국 뇌물수수법, 중국정부의 부패척결 움직임 등 세계적인 반부패 추세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제3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팩스TV, 금융보안포럼이 공동주최한 '제3회 아시아경제 금융IT포럼'이 11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소비자 보호와 전자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금융IT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하여 정보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이준희 변호사는 '전자금융의 현재와 미래' 세션에서 '전자금융이 용자 보호를 위한 해외 법제도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11번째 자선 바자회 개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직원들이 물품을 기증해 직접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가게 김·장 Day'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습니다.



2013년 12월 14일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개최된 이번 자선 바자회는 구성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1,500여 점의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한편, 무료법률상담 행사도 진행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유명 화백의 그림과 중국 다기 등 특별한 물품 기증으로 공개경매가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아름다운가게’에 전달되어 독거 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성금 등으로 쓰였습니다.

11년간 이어온 이 행사에는 지금까지 600여 명의 구성원이 참여하고, 14,000여 점에 가까운 물품이 기증되었습니다.

Newszine

February 2014, Issue 1

金·張 法律事務所
KIM & CHANG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우) 110-720
전화: 02-3703-1114 팩스: 02-737-9091/9092 이메일: lawkim@kimchang.com www.kimchang.com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희 사무소의 공식적인 법적 견해나 법률 자문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나 행위에 앞서서는 반드시 저희 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 문서)은 출처와 저자(KIM & CHANG)를 밝히고 내용을 임의 편집하지 않는 경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하여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정보 전달 서비스의 수신인을 추가하고자 하시면 newsletter@kimchang.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